

경운대학교 진로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진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진로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각 기능간 연계성, 체계성 확립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고,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구성)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주관부서가 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진로교과목 개발 및 개선
2. 진로교과목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
3.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진로 관련 각종 진단 및 검사 업무
5. 진로설계 지도교수 지정 및 운영
6. 각종 진로지원사업의 행정 지원
7.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
8. 진로 통계 조사, 진로 정보 및 고용동향 등 취업 지표 관련 업무
9. 진로지원 프로그램 편성 및 성과분석 업무
10. 기타 진로와 관련되는 업무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·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결과
2.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·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5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4장 기타

제7조(기타규정)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류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